서울특별시 강서구 화재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2024-6

제출년월일 : 2024년 1월 일

제 출 자 : 강서구청장

1. 의결주문

서울특별시 강서구 화재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이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과 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로 분리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개정 이전의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의 규정을 정비함(안 제1조)

- (현행)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조
- (개정)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0조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10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　　의 : 해당없음

라. 기　　타

1) 입법예고(2023. 12. 13. ~ 2024. 1. 2.) 결과: 의견 없음

2) 부패영향평가 결과: 원안 동의

3) 규제사전심사 결과: 해당 없음

4) 성별영향평가 결과: 해당 없음

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강서구 화재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강서구 화재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조례는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제8조”를 “조례는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10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・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--조례는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10조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 ----------.

서울특별시 강서구 화재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○ 해당사항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9조제4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비용추계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.

3. 미첨부 사유

○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의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별도의 재정이 소요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.

4. 작성자

성 명	안전교통국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(담당: 행정8급 이 건)
연락처	02-2600-6994

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

평 가 번 호	2023-37				
자 치 법 규 명	「서울특별시 강서구 화재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				
평가담당부서	감사담당관	직 급	행정7급	성 명	정용훈
입안주무부서	안전관리과	조치일		2023. 12. 19.	
관 련 조 문		검 토 결 과		조 치 사 항	
- 조례 일부개정안		- 부패유발 요인 없음		- 원안동의	

규제 사전심사 검토의견서

□ 자치법규명

○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재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□ 제안이유

○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이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과 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로 분리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

□ 주요내용

○ 개정 이전의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의 규정을 정비함(안 제1조)

- (현행)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제8조
- (개정)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10조

□ 검토의견

○ 동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의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,

○ 「행정규제기본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.

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통보 확인서

<table>
<tr><td>관리번호</td><td colspan="4">2023A서울강서034</td></tr>
<tr><td>정 책 명</td><td colspan="4">서울특별시 강서구 화재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</td></tr>
<tr><td rowspan="3">소관부서</td><td>기관명</td><td colspan="3">서울특별시 강서구</td></tr>
<tr><td>부서명</td><td colspan="3">안전관리과</td></tr>
<tr><td>담당자명</td><td>이건</td><td>전화번호</td><td>02-2600-6994</td></tr>
<tr><td rowspan="3">담당부서</td><td>기관명</td><td colspan="3">서울특별시 강서구</td></tr>
<tr><td>부서명</td><td colspan="3">가족정책과</td></tr>
<tr><td>담당자명</td><td>안소현</td><td>전화번호</td><td>02-2600-6762</td></tr>
<tr><td>체크리스트 제출일자</td><td colspan="4">2023년 12월 14일</td></tr>
<tr><td>완료(제외) 통보일자</td><td colspan="4">2023년 12월 18일</td></tr>
</table>

해당 과제는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되어 제출된 체크리스트만으로 성별영향평가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2024년 01월 11일

붙임 | **관계법령**

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제10조(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) ①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소화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(이하 “주택용소방시설”이라 한다)을 설치하여야 한다.

1. 「건축법」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
2. 「건축법」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(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)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③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또는 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의 조례로 정한다.